(사) 한국지반공학회 학술연구용역 운영 규정

2012년8월 10일 제정2013년6월 14일 개정2013년9월 13일 개정2017년5월 11일 개정2018년2월 01일 개정2019년6월 3일 개정

제1절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(사)한국지반공학회(이하 학회)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하는 학술연구용역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외부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부가세 면세 또는 부가세 포함 학술연구용역(연구, 기술용역, 기술검토, 자문 등)에 적용하며, 학술연구용역은 학회 가 유치하는 학술연구용역, 회원이 유치하는 학술연구용역, 기타 학술연구용역으로 구분한다.
- 제3조(심의기구) 학술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한다.
- 제4조(회계처리) 이 규정에서 지정하지 않은 학술연구용역 회계처리는 세무관련 법규 또는 국세청 등 당국의 기준을 적용한다.

제2절 연구진

- 제5조(연구진의 구성과 자격) ① 연구진은 책임연구원, 연구원, 보조연구원 등으로 구성할수 있다. 다만 연구의 규모, 기간 및 연구비 등을 고려하여 대형 연구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 책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.
 - ② 연구진은 학회의 회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보조연구원과 우리학회에 해당분야 전공자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- 제6조(책임연구원의 자격과 선임) ① 책임연구원은 지반공학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, 특히 연구진의 통솔과 연구기획, 조정능력을 갖춘 학회회원이어야 한다.
 - ② 책임연구원은 전문성, 지역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이 선임한다. 이 경우 해당 전문위원 회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.
 - ③ 단, 학술연구용역 의뢰자가 책임연구원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의뢰자의 요구에 따라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며, 지정된 회원이 책임연구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장은 의뢰자와 협의하여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수 있다.

- 제7조(책임연구원의 역할과 책임) ① 책임연구원은 연구진의 구성, 학술연구용역의 진행, 성과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, 학회위상 유지 준수, 연구기간의 엄수 등 계약서상에 명 시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, 학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용역수행 진도 상황 을 보고하여야 한다. 단, 학회가 유치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위하여 선임되는 책임연구원 은 해당 지역(권역) 전문가 회원을 포함하여 연구진을 구성하여야 한다.
 - ② 책임연구원은 용역 성과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학회를 대신하여 책임을 져야한다.

제3절 계약

- 제8조(계약) ① 학술연구용역은 학회 표준계약서(별지 1호 서식)에 준하여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용역 의뢰처의 계약형식과 상이할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 형식을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주요 변경내용을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 - ② 학술연구용역으로써의 부적합 소지 및 성과의 법적분쟁 소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 할 경우 학술연구용역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친 후 계약여부를 결정한다.

제4절 연구비 예산

- 제9조(연구비 계상 등)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가 확정되면,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실행예산서(별지 2호 서식)를 작성한 후 회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. 이 때 실행예산서는 지원기관의 연구비 비목별 산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실행예산 편성 및 변경) ① 모든 학술연구용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구협약을 체결할 때에 제출한 연구계획서상의 소요예산을 실행예산으로 간주한다.
 - ② 연구협약체결 이후에 실행예산을 변경할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실행예산변경 신청서(별지 3호 서식)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11조(간접연구비) 학술연구용역 연구비 중 학회의 간접제경비로 지급하는 것을 간접연구비라 하며, 그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(간접연구비는 기부금으로 처리 할 수 있다).
- ① 학회가 유치하는 학술연구용역 : 계약금액의 20%
- ② 회원이 유치하는 학술연구용역 : 계약금액의 15%
- ③ 외부기관이 공모를 통하여 발주한 기타 학술연구용역 : 지원기관의 규정 또는 이사회 승인
- ④ 국가건설기준센타 등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기타 학술연구용역은 필요에 따라 ③항으로 적용한다.
- ⑤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위해 필요한 보증보험료 등은 간접비와 별도로 수용비 및 수수료 에 계상하여야 한다.
- ⑥ ①~⑤항 중 특별한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간접비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⑦ 지반공학연구소가 관리하는 학술연구용역 간접연구비의 1/3을 연구소 재정으로 계상할 수 있다.

제5절 위탁용역(조사 및 실험 등)

- 제12조(위탁용역 의뢰) ①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책임연구원은 조사 및 실험 등 위탁용역을 외부에 의뢰할 수 있으며, 위탁용역 비용은 학회 간접비에 계상하지 않는다.
 - ② 위탁용역 의뢰시 학회의 특별회원사를 위탁용역의 수행기관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6절 연구보고서

- 제13조(연구보고서 작성) 학술연구용역 보고서는 학회 "연구보고서 작성요령"에 준하여 작성한다.
- 제14조(연구성과 자문) ① 모든 학술연구용역은 연구성과 자문을 받아야 한다.
 - ② 보고서 제출 전 연구성과의 객관성과 중립성 평가, 성과물의 완성도 제고 등을 위해 학술연구용역위원회에서 연구성과 자문위원을 위촉한다.
 - ③ 학술연구용역위원회가 위촉하는 자문위원수는 최소 1인 이상으로 하되 책임연구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원회 위촉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최소 2인 이상을 위촉한다. 만약 학술연구용역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성과 자문의 경우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 - ④ 연구성과 자문비는 연구비 비목별 집행 기준(별표 1)에 따른다.
 - ⑤ 연구성과 자문위원은 학술연구용역 자문서(별지 4호 서식)를 작성하여 학회로 제출한다.

제7절 연구비 관리

- 제15조(연구비 지급) ①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 선급금, 중도금을 수령한 학회는 5일이내에 연구비 수령비율을 고려하여 적법한 세무·회계 절차에 따라 책임연구원이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연구비를 이체해야 한다.
 - ② 연구비 잔액은 학술연구용역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 연구비 정산이 승인된 후 책임연구원이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한다.
 - ③ 학회는 학술연구용역 종료 후 원천징수한 비용을 참여 연구원 명의로 납부해야 한다.
- 제16조(연구비 집행) ① 연구비는 용역 준공금 수령 후 1주일 이내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, 해당 학술연구용역과제의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 - ② 연구비 집행은 신용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.
- 제17조(연구비 정산) ① 책임연구원은 학술연구용역 연구비 집행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(별지 5호 서식)를 작성하여 학회에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.
 - ② 연구비 집행(정산)의 증빙서류는 구체적인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 확인서, 세금계산서,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한다.

제8절 일반관리비 배분기준

- 제18조(일반관리비 배분) ① 일반관리비는 수익사업부분과 고유목적사업부분으로 나누어 배분한다.
 - ② 배분항목은 실질귀속에 따르되, 인건비 및 관련제반 비용의 구분은 수익사업부분 70%, 고유목적사업부분 30%로 배분한다.

부 칙 (2012. 08. 10)

1.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에 학회로 연구비가 입금된 학술연구용역부터 시행한다. 2.(경과조치)이 규정 시행과 동시 한국지반공학회 학술연구용역비 요율 규정은 폐지한다.

부 칙 (2013. 06. 14)

1. 이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3. 09. 13)

1. 이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7. 05. 11)

1.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8. 02. 01)

1.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9. 06. 03)

- 1.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폐한다.
- 2.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학술연구용역 계약서

학술연구용역명:

계 약 금 액:

연 구 기 간:

위 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 의뢰자 대표 을 "갑"으로 하고 수행자 (사)한국지반공학회 회장 OOO를 "을"로 하여 다음 계약조항 및 부속 문서를 계약내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연구내용 및 범위) 별첨 학술연구용역 계획서 내용과 동일함

- 제2조(수행) "을"은 이 용역을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과업을 수행한다.
- 제3조(성과보고서 제출) "을"은 을이 수행한 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 연구기 간 내에 학술연구용역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4조(용역비 지급) 학술연구용역비는 계약과 동시에 50%를 지불하고 최종 보고서 제출시 50%를 지불한다.
- 제5조(계약변경) 본 학술연구용역 수행 중 계약변경이 필요한 시에는 "갑"과 "을"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제6조(상호협조) "을"은 이 학술연구용역 수행과정을 통하여 "갑"의 요청이 있을 때는 학술연구용역 내용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"갑"또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"을"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7조(해석) 본 계약 내용의 해석상에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

위와 같이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**2**통을 작성하여 "갑"과 "을"이 각기 **1**부씩 보관한다.

※ 연구보고서 부

20 년 월 일

"갑"

대 표 이 사 (인)

"을"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9길 26
(문정동, 에이치비지니스파크 C동 701호)
사단법인 한국지반공학회
회 장 ○ ○ ○ (인)

학술연구용역비 실행예산서

					_ 20 년도																									
<u></u> 책	임연구원		소 속			직 급		성 명																						
학	술연구용역	l i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	구 기 긴	<u>'</u> }					연구비총	색																						
지	원 기관	<u></u>						·																						
	비 목	세	목	세 세 목	예 산	액(천원)	산	출	근	거																				
	인 건 비		인 건	비]																										
		_		기기 . 장비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		연 구 전 재 료		재료비 및 전산처리비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				시작품 제작비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]	지 저 비			여 비																										
실	직 접 비	비 연 활 동	구	수용비 및 수수료																										
행			활	활	활	활	활	활	활	활	활	활	활	활	활	활	활	활	활	활	활	활	활	동 비	기술정보 활동비					
계				식 대																										
획		위	탁 용 (조사 및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간 접	H H	연	구 비																										
	ō} ㅂ			계																										
한	한국지반공학회 학술연구용역관리규정 제9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연구비 실행예산서를 제출합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> </u>	책임연구원 (인) 하구지바고하히 히자 긔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^{*} 항목은 지원기관의 설정에 맞게 변경 가능함.

학술연구용역비 실행예산 변경신청서

결	담 당	국 장	이 사	회 장
재				

관 리 번 호		
학술연구용역		
지 원 기 관		
연구기간	연구비총액	

비목	세목	세세목	변경전	변경후	증감	변경사유
인건비	Ó.	! 건 비				
		기기.장비				
	연구장비 재료비	재료비 및 전산처리비				
		시 작 품 제 작 비				
717101	연 구 활동비	여 비				
직접비		수용비 및 수 수 료				
		기술정보 활동비				
		식 대				
	위 탁 용 역 비 (조사 및 실험)					
간접비	간 접 연 구 비					
	ō} 님	계				

한국지반공학회 학술연구용역관리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실행예산 변경을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책임연구원 :

(인)

한국지반공학회 회장 귀하

학술연구용역비 비목별 실행내역 예시

비목	세목	집행내역 예시				
인 건	<u>ਜ</u> ੍ਹੇ ਸ੍ਹੀ	○ 실소요 경비 - 책임연구원, 연구원, 보	L조연구원 등 계상			
	연 구 장 비 · 재료비	○ 기기 및 장비○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○ 시작품 제작비	○실소요 경비			
		○ 여비	○ 책임연구원 소속기관의 여비규정에 따름 - 연구원의 국내.외 출장여비			
		○ 수용비 및 수수료	○ 실소요 경비 - 인쇄비, 복사비, 공공요금, 보증보 등	험료, 각종 수수료, 사무용품비		
직접비	연 구		○ 실소요 경비 - 전문가 활용비. 국내.외 교육훈련' 개최비, 학술대회 참가비, 원고료, 통약료, 연구성과 자문비 ○ 연구성과 자문			
	활동비	○ 기술정보활동비	학술연구용역비	자문비(원/명)		
			3천만원 이하	300,000		
			3천만원~5천만원 이하	400,000		
			5천만원~1억원 이하	500,000		
			1억원~2억 5천만원 이하	650,000		
			2억 5천만원~5억원 이하	800,000		
			5억원 이상	1,000,000		
		○ 식대	○ 실소요 경비 - 과제수행에 필요한 연구원 식대			
	위탁 용역비 (조사 및 실험)	○ 실소요 경비(계약금액)				
		② 회원이 유치하는 학술 ③ 외부기관의 공모를 통		계약금액의 20% 계약금액의 15% 지원기관의 규정 정 등 계약금액의 0%		



학술연구용역 자문서

Report No.			
학술연구용역			
자문요청일자	20	자문완료일자	20
자문위원			(서명)
자문료 지급 계좌정보	은행명:	계좌번호:	

* 답변서는 자유형식으로 지적하신 순번대로 작성하여 자문위원 및 학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한국지반공학회 사무국

(Tel: 02-3474-4428, Fax:02-3474-7379, E-mail:kgssmfe@hanmail.net)

학술연구용역비 사용실적 보고서

학술연구용역	
책임연구원	(소속) (성명)
연구비 총액	
연구기간	20 ~ 20
지 원 기 관	
한국지반공학회	학술연구용역 관리 규정 제17조에 의하여 위 학술연구용역 연구

한국지반공학회 학술연구용역 관리 규정 제17조에 의하여 위 학술연구용역 연구비의 사용실적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.

붙임 : 1. 학술연구용역비 사용계획과 집행실적

- 2. 인건비 집행내역
- 3. 연구장비.재료비 집행내역
- 4. 연구활동비 집행내역
- 5. 자문료 집행내역
- 6. 여비 집행내역
- 7. 증빙서류

20 년 월 일

책임연구원: (인)

한국지반공학회 회장 귀하

학술연구용역비 사용계획 및 집행실적

구 분	예 산	사용실적	잔 액	집행율	증감사유
1. 인건비					
2. 직접비					
- 연구장비 재료비					
- 연구활동비					
- 위탁용역비					
3. 간접연구비					
총 액					

인건비 집행내역

성 명	소 속	주 소	주민등록번호	집행금액

연구장비 . 재료비 집행내역

품 목	회 사명	집 행 내 역

연구활동비 집행내역

품 목	회 사명	집 행 내 역

자문료 집행내역

성 명	소 속	주 소	주민등록번호	집행금액

여비 집행내역

성 명	소 속	집 행 내 역

증빙서류

비 목		세 목		세 세 목	
집행금액					
		ලි	수증 붙이는 곳		